

「돈통」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2024.08.22 디지털채널부

1. 개정시행(예정일) : 2024-09-15

2. 개정내용

| 현 행 | 개 정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 10조 (환불방법) ①~⑦ | <p>좌동</p> <p><신설> ⑧ 다음 각 호의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시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돈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. 돈통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. 돈통 (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기준)에 기록된 잔액이 100 분의 20 이하인 경우 4.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돈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돈통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가맹점 폐업 나.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다. 은행의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라. 전자금융거래법 제 38 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| <p>제 10조 환불방법 ⑧항 항목 신설</p> <p>전자금융거래법 제 19조 2항 4목 신설에 따른 약관개정</p> |

| 현 행 | 개 정 | 비고 |
|-----|--|----|
| | <p>마.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</p> | |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